■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4. 22.>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제28조제1항 관련)

공사의 종류	인가가 필요한 것	신고가 필요한 것
1. 발전소		
가. 설치공사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 설치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설치
나. 변경공사		
1) 발전설비의 설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 설치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설치
2) 발전설비의 변경 공사		
가) 원동력설비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로서 다음에 해당하 는 것	
(1)수력설비		
(가)댐	댐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 만의 발전소 댐의 설 치
		<ul><li>(2) 댐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본체의 강도나 안정도 또는 홍수토의용량 변경을 수반하는 것</li></ul>
(나)취수설비	취수설비의 설치	<ul><li>(1) 출력 1만킬로와트 미</li><li>만의 발전소 취수설비</li><li>설치</li></ul>
		<ul><li>(2) 개조하는 것으로서</li><li>통수 용량 또는 취수</li><li>탑의 강도 변경을 수</li><li>반한 것</li></ul>
(다)침사지(沈砂 池)	침사지의 설치 또는 개조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침사지의 설치 또 는 개조
	도수로 또는 방수로의 설 치·연장 및 개조	_ "

길) 또는 방수		로의 설치・연장 및 개조
, , , , , , , , , , , , , , , , , , , ,	헤드탱크 또는 압력 조정용 용기의 설치	만의 발전소의 헤드탱 크 또는 압력 조정용 용기의 설치 (2)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여수로(餘水路)의 용량 또는 여수로의 통수 용량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여수로 또는 여수 로의 종류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다) 압력 조정용 용기
(바)수압관로	수압관로의 설치 및 연장	에 영향을 미치는 것 (라) 압력 조정용 용기 의 강도의 변경을 수 반하는 것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 만의 발전소의 수압관 로 설치 및 연장 (2) 개조하는 것으로서
(사)수 차	수차의 설치	관 본체의 강도 변경 을 수반하는 것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 만의 발전소의 수차 설치
(아)양수식발전 소의 양수용 펌프	펌프의 설치	<ul><li>(2) 대체 또는 개조</li><li>(1) 출력 1만킬로와트 미</li><li>만의 발전소의 펌프 설치</li></ul>
(자)저수지 또는	저수지 또는 조정지의 설	<ul><li>(2) 대체 및 개조</li><li>(1) 출력 1만킬로와트 미</li></ul>

조정지	치	만의 발전소의 저수지
		또는 조정지 설치
		(2) 개조하는 것으로서
		상시 만수위(滿水位)
		또는 최저수위의 변경
		을 수반하는 것
(2)기력설비		
(가)증기터빈 또	(1) 증기터빈 또는 왕복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
는 왕복기관	기관의 설치	만의 발전소의 증기터
		빈 또는 왕복기관 설
		치
	  (2) 증기터빈 또는 왕복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
	기관을 개조하는 것으	
	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변경을 수반하는	개조하는 것으로서 20
		퍼센트 이상의 출력
	/X	변경을 수반하는 것
		(3) 증기터빈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차실・원판 또는
		차축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조속장치 또는 비
		상조속장치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4) 대 체
(나)보일러	(1) 보일러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
		만의 발전소 보일러
		설치
	(2) 보일러를 개조하는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만의 발전소 보일러를
	것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
		음과 같은 것
	(가) 최고 사용압력 또	(가) 최고 사용압력 또
	는 최고 사용온도의	는 최고 사용온도의
	•	•

20퍼센트 이상의 변 경을 수반하는 것 (나) (증기)재가열장치 의 최고 사용압력 또 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 경을 수반하는 것 (다) 드럼 또는 안전밸 브에 관한 것

20퍼센트 이상의 변 경을 수반하는 것

- (나) (증기)재가열장치 의 최고 사용압력 또 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 경을 수반하는 것
- (다) 드럼 또는 안전밸 브에 관한 것
- (3)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 상의 가열면적 변경을 수반하는 것
- (4) 대 체
- (5) 수리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 (가) 드럼 또는 안전밸 브의 대체
  - (나) 드럼의 강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
  - (다) 안전밸브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
- 만의 발전소의 연료연 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 (2) 연료연소설비를 개조|(2) 출력 1만킬로와트 미 만의 발전소의 연료연 소설비를 개조하는 것 으로서 연료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발전소의 공해방지설비를 설치 · 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刊

- (다)연료연소설 (1)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 또는 대체
  - 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비

(라)공해방지설 공해방지설비를 설치·개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조 또는 폐지하는 것

(마)증기밸브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 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밸브의 설치
(바)보조설비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로서 제31조제2항 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
(3)가스터빈 설치 (가)가스터빈	가스터빈의 설치 또는 대	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
	체	만의 발전소의 가스터 빈의 설치 또는 대체 (2) 개조하는 것으로서
(나)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의 설치 또는	20퍼센트 이상의 출력 변경을 수반하는 것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
	대체	만의 발전소의 공기압 축기 설치 또는 대체 (2) 차실 또는 차축의 강 도 변경을 수반하는
(다)여류여소석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개조
비	대체	만의 발전소의 연료연 소설비 설치 및 대체
		(2) 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라)보조설비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 전소로서 제31조제2항의 용 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4)복합화력설비		
(가)가스터빈	가스터빈의 설치 또는 대 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 의 발전소의 가스터빈 설치 또는 대체
		(2) 개조하는 것으로서

(나)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의 설치 또는 대체	20퍼센트 이상의 출력 변경을 수반하는 것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 만의 발전소의 공기압 축기 설치 또는 대체 (2) 차실 또는 차축의 강
(다)연료연소설 비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도 변경을 수반하는 개조
(라)보일러	<ul><li>(1) 보일러의 설치</li><li>(2) 보일러르 개조하느</li></ul>	연료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 만의 발전소의 보일러 설치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만의 발전소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ul><li>(가) 최고 사용압력 또</li><li>는 최고 사용온도의</li><li>20퍼센트 이상의 변</li><li>경을 수반하는 것</li></ul>	<ul><li>(가) 최고 사용압력 또</li><li>는 최고 사용온도의</li><li>20퍼센트 이상의 변</li><li>경을 수반하는 것</li></ul>
	<ul> <li>(나) (증기)재가열장치</li> <li>의 최고 사용압력 또</li> <li>는 최고 사용온도의</li> <li>20퍼센트 이상의 변경</li> <li>을 수반하는 것</li> </ul>	<ul> <li>(나) (증기)재가열장치</li> <li>의 최고 사용압력 또</li> <li>는 최고 사용온도의</li> <li>20퍼센트 이상의 변경</li> <li>을 수반하는 것</li> </ul>
	(다) 드럼 또는 안전밸 브에 관한 것	<ul> <li>(다) 드럼 또는 안전밸 브에 관한 것</li> <li>(3)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가열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li> </ul>

(마.) 곤 체 바 지 선	공해방지설비를 설치·개	(4) 대 체 (5) 수리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드럼 또는 안전밸 브의 대체 (나) 드럼의 강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 (다) 안전밸브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用]	조 또는 폐지하는 것	발전소의 공해방지설비를 설치·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바)증기밸브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 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밸브 설치 또는 대체
(사)증기터빈	(1) 증기터빈 또는 왕복 기관의 설치	,
	(2) 증기터빈 또는 왕복 기관의 개조로서 20퍼 센트 이상의 출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터 빈 또는 왕복기관의 개조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 변경을 수반하는 것 (3) 증기터빈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차실·원판 또는 차축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조속장치 또는 비생조속장치의 종류변경을 수반하는 것

(아)보조설비 (5)내연력설비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4) 대 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로서 제31조제2항 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 는 대체
(가)내연기관	내연기관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내연기관 설치 또는 대체
(6)풍력설비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의 블레이드, 나셀 (외함과 외함 내외에 발전 기 등 나셀 구성품이 설치 되어 있는 풍력설비를 말 한다. 이하 같다) 및 타워 의 설치 또는 대체	발전소의 블레이드, 나셀
(7)원자력설비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원자력발전소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증기터빈설	(1) 증기터빈의 설치 또	(1) 증기터빈의 설치 또
刊	는 대체	는 대체
	(2) 증기밸브의 설치 또	(2) 증기밸브의 설치 또
	는 대체	는 대체
	(3) 습분분리 (증기)재가	(3) 습분분리 (증기)재가
	열장치의 설치 또는	열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대체
		(4) 증기터빈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u>것</u>	것 (1) 기기
	(가) 차실・원판 또는	, , , , ,
	차축의 강도 변경을	차축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조속장치 또는 비	수반하는 것 (나) 조속장치 또는 비
	상조속장치의 종류	상조속장치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급수설비	, , , , , ,	급수펌프의 설치 또는 대

	체	체
(다)복수설비	복수기(復水器)의 설치 또	복수기의 설치 또는 대체
(라)보조설비	는 대체 (1) 공기압축기의 설치	(1) 공기압축기의 설치
	또는 대체 (2) 제31조제2항의 용기	또는 대체 (2) 게21 ~게2참이 요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나) 발전기계통설비		
(1)발전기		(1) 용량 1만킬로볼트암
	페어 이상의 발전기 설치 또는 대체	페어 미만의 발전기 설치 또는 대체
		(2)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
	어 이상의 발전기를 개	어 미만의 발전기를 개
	조하는 것으로서 20퍼	
	센트 이상의 전압 또는 용량 변경을 수반하는	센트 이상의 전압 또는 용량 변경을 수반하는
	것	것
(2)변압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	
	압기 설치 또는 대체	볼트 미만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원자력발전소의 경우 1만볼트 이상 20만
		볼트 미만의 변압기 설치
(-) -) · )		또는 대체)
(3)차단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 단기 설치 또는 대체(원자
		력발전소의 경우 1만볼트
		이상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1) 태양광설비		
(가) 태양전지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인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인
		태양전지의 설치 또는 전
	체 모듈의 2분의 1 이상	체 모듈의 2분의 1 이상
	(정기검사 기간 내 모듈을	(정기검사 기간 내 모듈을

	교체하여 누적된 모듈 교	교체하여 누적된 모듈 교
	체량이 전체 모듈의 2분	체량이 전체 모듈의 2분
	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	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
	한다)의 대체	한다)의 대체
(나) 전력변환장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전력
	대체	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
		체
(다) 부대설비		구조물의 설치 또는 전체
		구조물의 2분의 1 이상
		(정기검사 기간 내 구조물
		일부를 교체하여 누적된
		구조물 교체량이 전체 구
		조물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2) 연료전지설비		
(가) 연료전지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인	_ , ,
	연료전지의 설치, 전체 대	연료전지의 설치, 전체 대
	체 또는 스택(모델·용량	체 또는 스택(모델·용량
	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	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
(, 1) - 리크니니 쥐 - 1	한다)의 대체	한다)의 대체
. , ,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_ , _ , , , , ,
<i>え</i> ]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다) 보조설비	대체 추려 1마키근 있는 이사이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4) 조그 단시		발전소로서 제31조제2항
		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
	는 대체	는 대체
(3) 전기저장장치	L 게/메 	L 게/베 
	I.	
(이동이 가능한		
(이동이 가능한 설비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		ı
(가) 이차전지	용량 1만킬로와트시 이상	용량 1만킬로와트시 미만
	인 이차전지의 설치 또는	인 이차전지의 설치 또는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
	하여 누적된 이차전지 교	하여 누적된 이차전지 교
	체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체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포함한다)의 대체
(나) 전력변환장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え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대체
(다) 부대설비		온도・습도・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설치 또는 대체
(4) 전기설비 계		도 네세
통		
(가) 차단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	전압 1만볼트 이상 20만
	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볼트 미만의 차단기의 설
		치 또는 대체
(나) 변압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	전압 1만볼트 이상 20만
	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볼트 미만의 변압기의 설
		치 또는 대체
(다) 전선로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전	전압 1만볼트 이상 20만
	선로의 설치・연장 또는	볼트 미만의 전선로의 설
	변경	치·연장 또는 변경
2. 변전소	기어 이미 보드 시시에 버	기사 아마보드 미미시 버
가. 설치공사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 전소 설치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변 전소 설치
나. 변경공사	[ 건그 - 단기	TU E/1
1) 변압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변
	전소 설치 또는 대체	전소 설치 또는 대체
2) 차단기		(1) 전압 20만볼트 이상

3) 전기저장장치		인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2) 전압 1만볼트 이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용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가) 이차전지	용량 1만킬로와트시 이상 의 이차전지의 설 치 또는 전체대체	용량 1만킬로와트시 미만 의 이차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대체
나) 전력변환장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 변환 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 는 대체
다) 부대설비	E-1	온도·습도·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설치 또 는 대체
3. 송전선로		
가. 설치공사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송 전선로 설치	(1) 전압 20만볼트 미만 으로서 선로 길이 10 킬로미터 이상인 송전 선로의 설치 (2) 전압 20만볼트 미만 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용인 송전선 로의 설치 (3) 전압 20만볼트 미만 으로서 선로 길이 1킬 로미터 이상인 지중 (地中) 송전선로의 설 치 (4) 전압 20만볼트 미만 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용인 지중 송 전선로의 설치
나. 변경공사 1) 전선로	전압 20만볼트 이상으로	

	서 선로 길이 5킬로미터 이상의 송전선로 연장 또	으로서 선로 길이 10 킬로미터 이상인 송전
	는 변경	선로의 연장 또는 변 경
		(2) 전압 20만볼트 미만 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용인 송전선로 의 연장 또는 변경
2) 개폐소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개 폐소 설치 또는 개조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개 폐소 설치 또는 개조
4. 배전선로		
가. 설치공사(전력케이블 및 부대설비)		전압 1만볼트 이상으로서 선로 길이 0.5킬로미터 이 상의 배전선로 설치[영 제
		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구 또는 전력구(이하 "공동구·전력구"라 한다) 만 해당한다]
나. 변경공사(전력케이블 및 부대설비)		전압 1만볼트 이상으로서 선로 길이 0.5킬로미터 이 상의 배전선로 연장 또는 변경(공동구·전력구만 해 당한다)
다. 전기저장장치		
다. 전기적성정적 1) 이차전지	용량이 1만킬로와트시 이	용량이 1만킬로와트시 미
	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	는 2분의 1 이상(정기검 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 체하여 누적된 이차전지
2) 전력변환장치		2분의 1이상인 경우를 포 함한다)의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인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3) 부대설비	온도·습도·분진 조절을 위
	한 공조시설의 설치 또는
	대체